주석

제 36(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35(전)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설공단

1. 공단의 개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시설공단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주요대행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탁 사 업	위탁연도	위 탁 사 업	위탁연도
지하도상가 관리	1983년	번호판영치지원	2002년
공영주차장 관리	1984년	추모공원 관리	2002년
어린이대공원 관리	1986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2003년
시립승화원 운영 및 묘지관리	1987년	상수도공사감독 업무	2003년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1994년	청계천 관리	2005년
공동구 관리	1995년	문화디지털 운영	2010년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1996년	서울글로벌센터 운영관리	2013년
도로환경 관리	1997년	고척돔경기장	2015년
공영차고지 관리	2000년	장충체육관	2015년
위탁공사감독 업무	2000년	공공자전거	2016년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2001년	주차장상가시설	2016년
월드컵경기장 관리	2001년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	2016년

당기말 현재 공단의 자본금은 264억원으로 전액 서울특별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공단의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령),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법(령), 지침 및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공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공단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공단은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은 항목별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대행사업관리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대행사업관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공단은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때)부터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10년 ~ 60년	정액법
구 축 물	15년 ~ 4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4년 ~ 10년	정률법
차 량 운 반 구	4년	정률법
공 기 구 비 품	4년 ~ 20년	정률법
수 탁 자 산	4년 ~ 40년	정액법, 정률법

공단은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운휴자산감가상각비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19일자로 개정된 지방공기업시행규칙에서는 가동설비자산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 원칙에 의거 지방공기업시행규칙 개정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종전대로 4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무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5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산정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원가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원가는 개발비로 계상하고,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습니다.

(6) 수탁자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자치단체 소유의 자산) 등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공단의 자산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자산손상

공단은 금융자산, 재고자산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공단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 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과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 보고기간말에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로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손상차손은 우선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배분되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이러한 경우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영(0)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대행사업예수금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목적의 예산외에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대행사업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충당부채

공단은 임직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을 교보생명보험(주)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퇴직보험료는 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충당부채

공단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11) 수익인식

공단의 수익은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자체사업은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으로 임대수입, 주차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업무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 정산시점에 반납대상 금액을 정산환출 등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에서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반납된 경우 미지급금으로, 대행사업별로 예산을 초과한 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입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단의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12) 법인세 등

공단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41,954	40,740
	보통예금	57,301,836	44,012,883
	소 계	57,343,790	44,053,623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88,324,430	81,765,269
장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418,090	1,647,456
합 계		147,086,310	127,466,348

4.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토지	5,125,658	-	-	-	5,125,658
건물	10,157,597	-	-	(275,095)	9,882,502
(정부보조금)	(296,600)	-	-	5,100	(291,500)
구축물	583,074	-	-	(42,929)	540,145
기계장치	109	-	-	-	109
차량운반구	510,039	373,872	(2)	(306,214)	577,695
(정부보조금)	(342,569)	(371,784)	-	219,388	(494,965)
공기구비품	263,202	277,888	-	(225,010)	316,080
합 계	16,000,510	279,976	(2)	(624,760)	15,655,724

(전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대체	처분	감가상각	기말
토지	5,125,658	-	-	-	-	5,125,658
건물	9,350,192	-	1,074,710	-	(267,305)	10,157,597
(정부보조금)	-	-	(300,000)	-	3,400	(296,600)
구축물	473,010	148,306	-	-	(38,242)	583,074
기계장치	1,355	-	-	-	(1,246)	109
차량운반구	60,782	554,495	-	(2)	(105,236)	510,039
(정부보조금)	-	(380,400)	-	-	37,831	(342,569)
공기구비품	223,564	231,793	-	-	(192,155)	263,202
건설중인자산	275,334	799,376	(1,074,710)	-	-	-
(정부보조금)	-	(300,000)	300,000	-	-	-
합 계	15,509,895	1,053,570	-	(2)	(562,953)	16,000,510

(2) 당기 및 전기 중 수탁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수탁자산	124,390,268	26,071,725	(728,473)	(65,820)	149,667,700
감가상각누계액	(49,074,514)	-	728,461	(12,895,103)	(61,241,156)
수탁자산취득보조금	(75,315,754)	(26,071,725)	12	12,960,923	(88,426,544)
합 계	-	-	-	-	-

(전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수탁자산	97,293,067	27,726,699	(552,820)	(76,678)	124,390,268
감가상각누계액	(40,827,609)	-	552,290	(8,799,195)	(49,074,514)
수탁자산취득보조금	(56,465,458)	(27,726,699)	530	8,875,873	(75,315,754)
합 계	-	-	-	-	-

상기 수탁자산은 2006년 이후 서울시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보유토지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시지가	장부금액	공시지가
토지	마장동 527-6	3,274,393	22,184,496	3,274,393	21,145,896
토지	홍익동 302-5	798,088	488,313	798,088	462,977
토지	홍익동 302-15	1,053,177	514,486	1,053,177	487,792
합 계		5,125,658	23,187,295	5,125,658	22,096,665

5. 보험가입자산

당기말 현재 공단이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기간	보험회사
재해복구보험	건물 및 구축물	1,076,759,201	2018-01-01~2018-12-3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본사 청사 건물에 대하여 재해복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단 명의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물(월드컵경기장, 주차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단 명의로 재해복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무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상각	기말
개발비	1,376,908	47,554	(627,431)	797,031

(전기)

				(단위 : 천원)
과 목	기초	취득	상각	기말
개발비	1,220,742	451,688	(295,522)	1,376,908

(2)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무형자산상각비은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7. 연구개발비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연구용역비	524,286	176,628

8.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잔액	71,757,385	64,490,897
퇴직급여지급액	(7,605,565)	(6,300,565)
충당부채설정액	18,026,652	13,567,053
기말잔액	82,178,472	71,757,385
차감 : 퇴직보험예치금	(9,604,236)	(10,412,329)
국민연금전환금	(2,975)	(2,975)
잔 액	72,571,261	61,342,081

9. 정산환출

(1) 당기 및 전기의 정산환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3,043,003	22,426,856
이자수익 반납액	127,031	165,199
합 계	13,170,034	22,592,055

(2) 당기 및 전기의 대행사업 및 본부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본 부	대 행	합 계
대행사업비 수령액(A)	27,053,267	315,919,949	342,973,216
자체수입 등(B)	3,245,315	-	3,245,315
대행사업비 사용액(C)	(29,259,297)	(293,424,090)	(322,683,387)
인건비	(13,453,191)	(132,720,756)	(146,173,947)
경비	(14,647,005)	(142,728,894)	(157,375,899)
유형자산	-	(17,974,440)	(17,974,440)
영업외비용	(1,142,476)	-	(1,142,476)
법인세 등	(16,625)	-	(16,625)
대행사업비 미사용액(D=A+B-C)	1,039,285	22,495,859	23,535,144
이월액 순증감(E)	44,927	(10,733,042)	(10,688,115)
전기이월액	94,083	3,689,025	3,783,108
전기이월 집행액	(49,156)	(3,657,141)	(3,706,297)
차기이월액(주2)	-	(10,764,926)	(10,764,926)
미수금 순차감(F)	-	195,974	195,974
전기이월분 당기 상계액	-	-	-
당기 미수금 발생	-	195,974	195,974
반납액(G=D+E+F)	1,084,212	11,958,791	13,043,003
대행사업 대체(주1)	(1,084,212)	1,084,212	-
협의 반납액	-	13,043,003	13,043,003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본 부	대 행	합 계
대행사업비 수령액(A)	25,073,932	294,016,851	319,090,783
자체수입 등(B)	2,714,211	-	2,714,211
대행사업비 사용액(C)	(25,985,800)	(273,655,230)	(299,641,030)
인건비	(12,546,167)	(121,708,475)	(134,254,642)
경비	(12,307,346)	(129,475,946)	(141,783,292)
유형자산	-	(22,470,809)	(22,470,809)
영업외비용	(1,132,287)	-	(1,132,287)
대행사업비 미사용액(D=A+B-C)	1,802,343	20,361,621	22,163,964
이월액 순증감(E)	-	402,118	402,118
전기이월액	4,179,849	1,541,008	5,720,857
전기이월 집행액	-	(1,535,631)	(1,535,631)
대행사업 대체(주1)	(4,179,849)	4,179,849	-
차기이월액(주2)	-	(3,783,108)	(3,783,108)
미수금 순차감(F)	-	(139,226)	(139,226)
전기이월분 당기 상계액	-	(139,226)	(139,226)
당기 미수금 발생	-	-	-
반납액(G=D+E+F)	1,802,343	20,624,513	22,426,856
대행사업 대체(주1)	(1,802,343)	1,802,343	-
협의 반납액	-	22,426,856	22,426,856

(주1) 전기부터 서울시의 요청으로 본부 반납액(대행사업에 대한 간접관리비)은 각 대행사업 주무부서의 반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당기 집행된 보험료에 대한 선급분 787,872천원(전기: 476,049천원)은 차기이월이 아니라 차후 보험료 비용 인식시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산수령액 중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잔액으로 차기이월액(선수금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대행사업	10,764,926	3,783,108

10. 대행사업예수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행사업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 류	당기말	전기말
공영주차장	1,737,737	-
자동차전용도로	6,024,976	12,217,971
도로환경	1,355,320	1,529,995
도로시설물	12,994,086	537,493
추모공원	516,890	516,912
돔경기장	50,000	128,328
월드컵경기장	-	181,480
어린이대공원	5,401	-
합 계	22,684,410	15,112,179

(2) 당기 및 전기 중 대행사업예수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전기이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
	수령액	이자	집행액	반납액	
15,112,179	57,900,603	151,380	(45,810,215)	(4,669,537)	22,684,410

(전기)

(단위: 천원)

전기이월액	증 가		감 소		기말잔액
	수령액	이자	집행액	반납액	
3,257,868	52,672,369	108,426	(38,975,588)	(1,950,896)	15,112,179

11.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000,000천원이며, 당기와 전기 중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자본금	26,435,160	26,435,160
기타자본잉여금(주1)	2,652,928	2,652,928
합 계	29,088,088	29,088,088

(주1) 2006년까지는 대행사업관리원가로 취득한 유형자산을 수탁자산과 기타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관련처분손실을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였으나, 2007년중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수탁자산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던 부분을 수탁자산의 차감항목인 수탁자산취득보조금계정으로 표시하고 당해 수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수탁자산취득보조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6(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9년 3월 27일	처분확정일	2018년 3월 27일

서울시설공단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당기순이익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13. 법인세 등

공단의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과세소득의 22.0%(2억 미만은 11.0%)이고, 당기 중 인식한 법인세부담액은 16,625천원(전기 -천원)입니다.

14. 포괄손익계산서

공단의 당기 및 전기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36(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35(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	-
포괄이익	-	-

15. 현금흐름표

공단은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당기 및 전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장기금융상품 유동성 대체	1,512,975	1,569,604
건설중인자산의 건물 대체	-	774,709

한편, 현금흐름표 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16. 금융상품

(1)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1년	1~5년	5년 이상	합 계
미지급금	-	13,170,034	-	-	-	13,170,034
미지급비용	3,304,962	2,201	-	-	-	3,307,163
예수보증금	133,940	-	-	5,211,371	-	5,345,311
임대보증금	-	-	297,070	4,236,895	-	4,533,965
합 계	3,438,902	13,172,235	297,070	9,448,266	-	26,356,473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1년	1~5년	5년 이상	합 계
미지급금	-	-	22,592,055	-	-	22,592,055
미지급비용	1,608,970	24,998	-	-	-	1,633,968
예수보증금	-	-	-	6,706,979	-	6,706,979
임대보증금	-	-	-	4,498,118	-	4,498,118
합 계	1,608,970	24,998	22,592,055	11,205,097	-	35,431,120

(2) 유동성위험관리

공단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공단은 1년간의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사업비의 수령 및 지출에 따라 현금흐름이 관리되며 미사용 사업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는 1년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 특수관계자 공시

당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명 칭	구 분	매출 등		매입 등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서울특별시	예산 내 대행사업	296,760,822	270,259,701	-	-
	예산 외 자금 수수액(주1)	60,398,052	52,780,795	52,825,821	40,926,484
합 계		357,158,874	323,040,496	52,825,821	40,926,484

(주1) 주석 2의 (8) 대행사업예수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예산 외에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행사업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지출시 대행사업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명 칭	미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대행사업예수금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서울특별시	297,495	101,521	13,170,034	22,592,055	11,552,798	4,259,157	22,684,410	15,112,179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임직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내 역	당 기	전 기
장기대여금	임직원자녀학자금	3,566,937	4,209,493

18.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공단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 류 법 원	원 고	피 고	사 건 내 용	소 송 가 액	진 행 상 황
공단이 원고인 사건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신정훈	건물명도	39,288	(주2)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박구례	건물명도 등	12,964	(주2)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송정애	건물명도	50,939	(주2)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김상진	건물명도	12,458	(주2)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이인수	건물명도	13,583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권은영	건물명도	8,981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	건물명도	108,218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전금순	건물명도	12,681	(주2)
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전윤옥	건물명도	13,189	(주3)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꾸지뽕 외 1	기타(금전)	152,752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이금주	건물명도	12,708	(주2)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정귀연	건물명도 등	25,466	(주2)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이신자 외 3	건물명도 등	50,552	(주2)
서울동부지법	서울시설공단	㈜주성샵코리아	변상금 등	1,460,080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에프포솔루션	광고물 철거 등	54,802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이주영	건물명도(인도)	57,738	(주1)
서울남부지법	서울시설공단	다인에프씨㈜ 외 5	건물명도(인도)	60,572	(주1)
서울남부지법	서울시설공단	김경옥	건물명도(인도)	54,191	(주1)
서울남부지법	서울시설공단	다인에프씨㈜ 외 5	사용료	44,955	(주1)
서울동부지법	서울시설공단	고희석	사용료 등	23,630	(주1)
서울동부지법	서울시설공단	㈜씽크플러스	부당이득반환 등	6,984	(주1)
서울남부지법	서울시설공단	㈜보부하이테크	부당이득반환 등	12,444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박성훈	건물명도	3,268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정일환	건물명도	3,511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이재란	건물명도	3,620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최봉춘	건물명도	5,118	(주1)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설공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000	(주1)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설공단	김민정	건물명도(인도)	4,218	(주1)
서울동부지법	서울시설공단	권진승 외 6	부당이득금	27,395	(주1)
합 계				2,536,305	
공단이 피고인 사건					
서울동부지법	강기철 외 444	서울시설공단	임금	222,500	(주1)
서울중앙지법	최문선 외 267	서울시설공단	임금	666,758	(주1)
서울중앙지법	김덕수 외 7	서울시설공단	임금	4,000	(주1)
서울동부지법	김진만	서울시설공단	용역비	93,014	(주1)

(단위 : 천원)

계 류 법 원	원 고	피 고	사 건 내 용	소 송 가 액	진 행 상 황
서울중앙지법	다인에프씨㈜ 외 5	서울시설공단	손해배상(기)	530,000	(주1)
대법원	가재선 외 1,402	서울시설공단	임금	11,504,244	(주4)
서울동부지법	최정우	서울시설공단	원상회복 등 청구	189	(주1)
서울동부지법	김정기	서울시설공단	채무부존재확인	94,674	(주1)
서울행정법원	㈜새서울개발	서울시설공단	관리위탁료 일부취소	19,975	(주1)
서울행정법원	조형래	서울시설공단	위탁료 증액 취소	50,000	(주1)
서울동부지법	㈜이고	서울시설공단	낙찰자지위 확인 등	186,186	(주1)
서울중앙지법	㈜대현프리몰	서울시설공단	계약해지 무효확인	50,000	(주1)
서울중앙지법	송병호 외 13	서울시설공단	채무부존재확인	872,742	(주1)
서울중앙지법	㈜에프포솔루션	서울시설공단	손해배상 등	168,000	(주1)
서울동부지법	최혁 외 6	서울시설공단	임금	10,713	(주1)
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시설공단	구상금	5,143	(주1)
서울동부지법	조재완 외 255	서울시설공단	임금	1,232,056	(주1)
합 계				15,710,194	

(주1) 당기와 그 이전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2) 전기와 그 이전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3) 전기 이전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2016년 6월 2심에서 공단이 패소함으로서 3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4) 전기 이전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2018년 2월 2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함으로서 3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단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 공 자 명	금 액	
		당기말	전기말
이행지급보증	서울보증보험	15,285,920	14,999,820

19.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사항

당기 및 전기 중 대행사업관리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급여(주1)	144,844,303	132,611,026
퇴직급여	18,296,116	13,686,452
복리후생비	43,217,169	41,840,335
지급임차료	10,173,410	9,863,193
감가상각비	624,760	562,952
무형자산상각비	627,432	295,522
세금과공과	15,592,721	12,038,214
합 계	233,375,911	210,897,694

(주1) 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성과급을 합한 금액입니다.